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신영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790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 재 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소유자의 부재로 방치된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신영대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4. 6. 21.

다. 회 부 일 : 2024. 6.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실 또는 유기됐거나 학대를 받은 동물 등을 발견했을 경우 그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 및 보호 조치를 하고, 피학대 동물은 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한 뒤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자가 사망, 입원, 행방불명, 구금되어 동물이 방치되는 경우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보호자의 갑작스런 부재로 홀로 남은 반려동물에 대한 마땅한 보호 대책이 없는 실정임.

특히 고령화 심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고독사 위험 가구도 증가하고 있어 반려동물 방치 위험도 커지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이 소유자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부재로 방치된 동물을 발견했거나 신고를 받아 인지한 경우 해당 동물을 긴급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안전망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소유자의 부재로 방치된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등에 대한 구조·보호조치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동물 소유자의 사망 등에 따른 부재로 인하여 방치된 동물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조·보호조치를 하도록 그 의무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 ----- ----- -----발견 또는 인지한-----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소유자가 사망, 입원, 행방불명,

현행	개정안
② ~ ④ (생략)	<u>구금 등으로 방치된 동물</u> ② ~ ④ (현행과 같음)

「동물보호법」 제34조¹⁾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유기·유실동물 및 피학대동물 등을 발견한 경우 구조·보호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동물들의 경우 소유자등²⁾으로부터 직접 보호조치를 받기 어려우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신하여 보호조치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그런데 소유자의 사망·입원·행방불명·구금 등의 사유에 따른 부재로 방치된 동물 역시 유기·유실동물 등과 마찬가지로 소유자등에게서 직접 보호조치를 받기 어렵지만, 현행법상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방치된 동물에 대하여 구조·보호조치를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1) 「동물보호법」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기·유실동물

2.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등으로부터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2)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최근 1인 가구 및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점차 소유자의 사망 등에 따른 부재로 반려동물이 홀로 방치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 동물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해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라 소유자가 부재하여 방치된 동물을 구조·보호 조치하기 위하여, 소유자의 거소 등에 출입하여 해당 동물을 이동시키는 것은 주거의 자유 등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방치된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필요성과 소유자의 권리보호 측면을 비교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개정안이 제시하는 소유자의 부재 사유 중 입원·행방불명·구금과 관련해서는 부재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관련하여 현행법 제4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신청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의 예시로 장기입원 또는 요양을 들고 있으며, 시행규칙을 통해 그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점³⁾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3) 「동물보호법」 제44조(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① 소유자등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동물인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7조(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③ 법 제44조제4항에서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유자등이 다른 방법으로는 정상적으로 동물을 사육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1. 소유자등이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을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소유자의 부재로 방치된 동물 역시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⁴⁾로서 구조·보호조치의 대상⁵⁾에 포함될 수 있고,

4)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유실·유기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피학대동물”이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라.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절한 길이의 목줄, 위생·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5) 「동물보호법」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등으로부터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절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동물보호법」 제44조에서 소유자등의 신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동물을 인수·보호하는 ‘사육포기 동물 인수제도’⁶⁾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활용할 수도 있는 등 현행법으로도 소유자의 부재로 동물이 방치되는 문제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임.⁷⁾

문 의 처

02)6788-5427

- 6) 「동물보호법」 제44조(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① 소유자등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인수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에 해당 동물의 소유권은 시·도 및 시·군·구에 귀속된다.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동물인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 7) 다만, 현행법상 유실·유기동물은 공공장소라는 장소적 조건을 필요로 하고, 피학대동물은 교통·상해 등의 발생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유자의 부재로 방치된 모든 동물이 현행법상 구조·보호 조치 대상 동물에 완전히 포함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고, 현행법 제44조의 사육포기 동물 인수제도의 경우 어디까지나 소유자등의 신청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제시하는 소유자의 부재 사유 중 사망·행방불명 등과 같이 소유자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해당 제도가 활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